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직업사회 다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이러한 학교가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또한,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존치하고, 일부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및 중학교의 특례 유지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인구 급감 등 급격한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공교육은 기존 지식 중심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길러주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의 수업공개와 동료교사 간 수업 나눔이 활성화되어야 함.

이에 따라,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장이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

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장학지도가 내실 있게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유형 도입(안 제76조의3 개정,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91조의3 신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 2) 자사고 등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91조의3제3항,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 3)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의 특례를 유지하되, 지역(시·도)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안 제81조의2,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호 제4항)
-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2조, 제44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4조, 제86조, 제89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5조의4, 제105조의5, 제105조의7, 제106조의3, 제106조의4)
-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심사 예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장학지도) ①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44조제2항 중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기학교”를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80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제81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정원의 20% 이상 모집하여야 한다.

제8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82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82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제8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제84조제3항 중 “제2항에도”를 “제2항 본문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제81조”를 “제81조, 제8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2조,”를 “제81조의2, 제82조,”로 한다.

제89조제1항 단서 중 “제90조제1항제5호”를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제90조제3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학교(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모집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0조제5항 중 “교육감이 제1항제5호”를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로 한다.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전단에 따른 모집정원이 미달된 경우 미달된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제8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모집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를 거쳐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율학교”를 각각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각각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

제105조의4의 제목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학교의”를 “자율학교등의”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율학교”를 각각 “자율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와”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와”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10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7 중 “제90조제4항 및 제91조제2항”을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4항”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제11호 중 “제82조 및 제82조의2”를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 제91조의3제4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중 “제81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를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단, 이 경우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정원의 20% 이상 모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장학지도) (생 략)	제8조(장학지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학교의 장은 수업 공개 활성화 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생 략)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 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 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삭제</u>	3. <u>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 립고등학교</u>
4. <u>삭제</u>	4. <u>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 립고등학교</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44조(학기) ① (생략)	제44조(학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제105조</u> <u>에 따른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u>	② ----- <u>제91조의3</u> <u>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u>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u>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3. (생략) 4. <u>삭제</u>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u>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u> ----- -- <u>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u>-----.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 ----- ----- -----. 1. ----- ----- ----- ----- <u>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u>----- ----- ----- 2. 3. (현행과 같음) 4. <u>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를 말한다)</u>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③·④ (생략)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1. ~ 3. (생략)

4. 삭제

5. (생략)

②·③ (생략)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

-----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1. ~ 2. (생략)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4. ~ 6. (생략)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1. 삭제

-----.

1. ~ 2. (현행과 같음)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 4. (생략)

④ ~ ⑧ (생략)

제81조의2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생략)

②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삭제

일 것

3.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정원의 20% 이상 모집하여야 한다.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

2. 삭제

③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일 것

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

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
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
원하는 학교

3. (생략)

⑦ · ⑧ (생략)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 (생략)

②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 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천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천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의 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생략)

⑦ 제2항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천·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천관리 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본문에 따른 -----

-----.

⑧ (생략)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① 교육감은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 계획상 추가 선발·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배정할 수 있다.

② 학생모집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⑧ (현행과 같음)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① -----

-----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

--.

② -----

-----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

--.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
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
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
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
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
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 ~ 5. (생략)

6. 삭제

7. ~ 10. (생략)

② (생략)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및 제1
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
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
의 고등학교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

야 한다.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제1항제6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모집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

야 한다.

⑥ ~ ⑨ (생 략)

제91조의3 삭제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

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전단에 따른 모집정원이 미달된 경우 미달된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제82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모집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제91조의4 삭제

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

	<u>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 <u>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u>사립 자율학교</u>의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및 제1항에 따라 <u>사립 자율학교</u>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① ----- ----- <u>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u> ----- ----- -----. ② ----- ----- ----- ----- <u>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u> - -----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105조의4(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
-----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① -----
--- 자율학교등 -----

----- 자
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

둔다.

1.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계획
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의 기간 연장 및 지
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 등
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
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
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 지정·운
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
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

---.

1. 자율학교등 -----

2. 자율학교등 -----

3. 자율학교등 -----

4. ----- 자율학교등 -----

-

② ----- 자율학교등 지정
· 운영위원회-----

-----.

③ -----
--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
회와 -----

-----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위원회 -----
---. -----

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할 수 있다.

제105조의5 삭제

-----.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
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
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
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
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
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서는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
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
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
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u>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및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u>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u>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u>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u>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4항-----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u>.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제81조,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2. ~ 15. (생략)

② ~ ⑬ (생략)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제63조에 따른 사립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1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

② (생략)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3조 (생략) <u>제4조 삭제</u> 제5조(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 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u>1.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u> <u>2. 제91조의3제4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u>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u>제4조(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제5조(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 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 -----
--	---

서 이 영 시행 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
속 지정되는 한 제81조 및 제82
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
해서는 제105조의3제3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제 8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
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정원의 20% 이상
모집하여야 한다.

②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연 락 처	(044) 203 - 6688 (044) 203 - 6697